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69호 2016. 05. 02.(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6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6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1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640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642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6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 3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6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6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6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654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6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3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5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로 한다.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조례 제5조 제2호와 제3호 규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및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으로, “제7호 규정에 의거”를 “제7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을 “제6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을 “따른 참전유공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정리 하여야”를 “정리하여야”로 한다. 제6조 중 “의하여 다음날 까지”을 “따라 다음날까지”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12시까지에”를 “12시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익년”을 “다음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간개장등”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개장 등”으로, “사용시간외”를 “사용시간 외”로 한다.

제9조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5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용권 (3종 : 어른, 청소년, 어린이)

<전면>

편 철 부 분	No. 000000	No. 000000	No. 000000
	-----	-----	-----
	썰매장사용권(원부)	회 수 권	영 수 증
	어른:₩ 원	어른:₩ 원	어른:₩ 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후면>

<이용자 주의사항> 1. 노약자, 임신부, 음주자는 이 용할 수 없습니다. 2. 2인이상 탑승을 금합니다 3.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썰매를 탈 수 없습니다. 4. 모든 이용자는 안전수칙과 안 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 한 안전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편 철 부 분
---	--	--	--

1. 용지규격은 32절 이하로 한다.
2. 100매를 1권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1999.12.30.>

셀매장 사용권 수불부

일자	분 류	구 분(매)					확 인 란	
		인쇄량	불출량	사용량	반납량	잔고량	인수자	과 장
	5 천 원 권							
	3 천 원 권							
	단 체 권							
	5 천 원 권							
	3 천 원 권							
	단 체 권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 - 6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4.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간재울2길 8외 2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04. 2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6-04-2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48-13	인천광역시 서구 간재울2길 8 (검암동)	2009-09-22	옛 지명(자연부락)에서 유래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4-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37 (오류동)	2009-07-10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지구8블럭3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길 76 (마전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74-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63번안길 1 (불로동)	2008-12-31	검단로763번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61-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 28 (경서동)	2009-09-22	경서지구를 관통하여 경서지구의 지명을 따 경서로로 명명	
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41-3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51 (원당동, 온누리장로교회)	2008-12-31	고산이라는 지명을 따 명명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18-10, 1618-9	인천광역시 서구 누리로 27 (오류동)	2012-10-25	"세상을 예스럽게 이르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8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27-1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368번길 22 (대곡동)	2013-07-30	대곡로 시작지점부터 약 3,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7-13, 1637-4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8로 11 (오류동)	2012-10-25	도담로에서 여덟번째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17-18, 416-3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안길 19-28 (금곡동)	2009-09-22	봉화로223번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16, 417-15, 416-2, 416-1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안길 19-31 (금곡동)	2009-09-22	봉화로223번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6-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1번길 21 (심곡동, 조양관광호텔)	2008-12-31	서곶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69-4	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 40-10 (대곡동)	2013-07-30	자연부락 명칭 반영	
14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69-6	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 40-8 (대곡동)	2013-07-30	자연부락 명칭 반영	
15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지구 A7블럭6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98번길 11 (가정동)	2014-10-15	염곡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9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05-18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 57-10 (마전동)	2008-12-3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05-24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 57-8 (마전동)	2008-12-3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28-1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62 (당하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19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0-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8 (오류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87-4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42번길 23-2 (석남동)	2009-09-22	율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9-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199 (경서동, 청라21세기교회)	2012-03-30	청라경관구조 계획에 의거 청라중심에 canal?? 이 있음을 부각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고시일 : 2016-04-2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 서구 가좌동 577-10	인천광역시 서구 뚝우물로 35 (석남동, 원일빌라)	인천광역시 서구 뚝우물로 33 (석남동, 원일빌라)	건물군 분할	2009-09-22	뚝나무로 뒤덮인 우물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옛 지명을 따서 유래
2	인천 서구 가좌동 167-19외2필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57번길 26(가좌동)	가정로77번길 49 (가좌동)	주출입구변경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 서구 금곡동 402-3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안길 5-6 (금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안길 9-5 (금곡동)	봉화로223번안길 1차종속도로입구 폐쇄	2009-09-22	봉화로223번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 서구 금곡동 402-2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안길 5-10 (금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안길 9-7 (금곡동)	봉화로223번안길 1차종속도로입구 폐쇄	2009-09-22	봉화로224번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 서구 금곡동 402-1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안길 5-12 (금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안길 9-10 (금곡동)	봉화로223번안길 1차종속도로입구 폐쇄	2009-09-22	봉화로225번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 - 6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6. 04.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서곶로301번길 19-1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6-2	서곶로301번길 19-1	2016.02.16.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6 - 640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05월 0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347,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서구관내”를 “서구 관내”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정소식등에”를 “구정소식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의”를 “각 호의”로,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한다.

제5조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해촉대장)”을 “(위촉·위촉 해제 대장)”으로 하고, 제6조의 본문 중 “위·해촉사항”을 “위촉·위촉 해제 사항”으로, “위·해촉 대장”을 “위촉·위촉 해제 대장”으로 하며, “비치·보관”을 “갖추어 두어 보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응 모 원 서			
성 명	(한자 :)		사 진 (3.5cm×4.5cm)
주 소			
생 년 월 일	연락처		
최 중 학 력			
주 요 경 력			
지 원 부 문			
본인은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 ○○○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 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이력서 1통			

접수번호 No.	접 수 증		
사 진 (3.5cm×4.5cm)	성 명	(한자 :)	
	주 소		
	생 년 월 일	년 월 일(만 세)	
	지 원 부 문		
	접 수 자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시행에</u> ----- -----.</p>
<p>제2조(위치)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는 <u>서구관내에</u> 둔다.</p>	<p>제2조(위치) ----- ----- -- <u>서구 관내에</u> -----.</p>
<p>제3조(예술단별 정원 및 단원의 수당)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u>제2조의 규정</u>에 의한 예술단의 정원은 별표1, 예술단별 단원의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p>	<p>제3조(예술단별 정원 및 단원의 수당) ----- ----- ----- <u>제2조에 따른</u> ----- ----- -----.</p>
<p>제4조(단원의 모집) ① 구청장은 단원을 신규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 기일 10일 이전에 구보, <u>구청소식등에</u>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u>각호의</u>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u>기간내에</u>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단원의 모집) ----- ----- ----- --- <u>구청소식 등에</u> ----- ---.</p> <p>② ----- ----- <u>각 호의</u> ----- ----- <u>기간 내에</u> ----- -----.</p>
<p>제5조(위촉장) 조례 <u>제7조의 규정</u>에 의하여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 단원에게 <u>별지제2호서식에</u>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p>	<p>제5조(위촉장) ----- 제7조에 따라 ----- ----- ----- <u>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u> ----- -----.</p>

<p>제6조(<u>위·해촉대장</u>) 구청장은 단원의 <u>위·해촉사항</u>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u>위·해촉 대장</u>을 예술단별로 <u>비치·보관</u>하여야 한다.</p>	<p>제6조(<u>위촉·위촉 해제 대장</u>)----- -----<u>위촉·위촉 해제 사항</u>----- -----<u>위촉·위촉 해제 대장</u>-----<u>갖추어 두어 보</u> <u>관</u>-----.</p>
--	--

[참고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642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5월 0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6년 2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전부 개정예에 맞도록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 추진
-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법령용어 및 문맥을 정비하여 규칙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2 주요내용

- 민원후견인 지정(제5조)
- 실무종합심의회 구성(제7조제3항)
-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1조제1항~제3항)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제12조제7항)
- 처리진행상황의 통지(제14조제3항)
- 의견 진술(제16조제2항)
-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민원봉사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55) 또는 Fax (560-285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로 민원인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32조 참조)
2. "기관장의 최종결정"이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적정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기관장의 최종결정

제2장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등

제4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민원봉사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민원후견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3장 실무종합심의회

제6조(설치) 복합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관사항을 공동심사, 처리하여 심의의 효율과 시간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④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심의회가 종료함으로써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민원으로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이고 협의대상 유관부서(기관)가 5개 이상일 경우
2. 사안이 중대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처리주무부서장은 민원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심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안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안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 처리담당자가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민원조정위원회

제10조(설치) 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조정사항이 필요한 민원 등 제12조의 대상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12조의 심의대상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 구성하며, 해당 민원이 끝남으로써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법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 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서기는 심의안건(별지 제2호서식)과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민원처리통보

제14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① 구청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 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최종처리결과 통지)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청장의 최종결정을 받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 진술) ① 위원장은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심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속직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 칙

제18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적용의 예외) 본청 이외 민원사무심사관을 별도로 두는 기관에서는 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3조의 규정을 따로 정하여 이 규칙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서

□개 최 일 시 :

□장 소 :

□민원사무명 :

□심 의 안 건 :

적 합	부 적 합	비 고

※해당(적합 및 부적합)란에는 근거 규정 등 사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술

상기와 같이 심의결과를 제출합니다.

위원회직위 : 소속 : 직 : 성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접수일	. . .			처리기한	. . . 까지(일간)		
구 분	민원명	주 된 소재지 (위 치)	주된 행위 (내용)	관련 부서	근거 법규	저촉 여부	예상되는 문제 점
주목적 민 원							
복 합 민 원							

[별지 제4호서식]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명			
접수일		처리완료 예정일	
민원처리 진행상황			
처리 담당자	소속		
	이름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끝.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장지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6 - 6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를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친화도시 추진목적 및 기본계획
-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재육성과 : 전화 032-560-5757, 팩스 032-560-271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를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아동친화도시 목적 및 정의
-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 건강증진
 - 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 아동 참여보장
 - 아동 실태조사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 아동영향평가 실시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

4. 참고사항

- 가. 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으로 모든 면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공간 확대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3. 각종 아동 유해요소로부터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 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써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정책은 제외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⑥ 구청장은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제15조(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이하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언어로 논의한다.

1.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및 예산
2.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연령과 성숙도 그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각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③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④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 전문가를 배치한다.

제18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또는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21조(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조성 아동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
2. 인천서부경찰서 담당 부서장
3.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
4.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
5. 아동 보호자 대표
6.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도시 공간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4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4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위원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6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5.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함으로써 구청장의 업무 비중을 분산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 법제처 조례 정비 과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장 직위 변경(안 제2조제2항)
 - 구청장 ⇒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개선에 따른 정비(안 제6조제3항, 안 제7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인재육성과, 전화 560-5893, 팩스 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함으로써 구청장의 업무 비중을 분산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 법제처 조례 정비 과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장 직위 변경(안 제2조제2항)
-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개선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안 제6조제3항, 안 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육성 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1인”을 “**1명**”으로 “2인”을 “**2명**”으로 하고, “15인”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육성등에”를 “**육성 등에**”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하고”를 “**도모하고**”로, “각호의”를 “**각 호 의**”로,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계행정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관련업무에”를 “**관련 업무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하고”를 “**사무를 총괄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연2회”를 “**연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제4항 중 “위원회에 회부할”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도”를 “**임기만료 전이라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임기중”을 “**임기 중**”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각각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 기본법</u>」 제11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청소년 기본법</u>」 제11조에 따라 ----- <u>육성위원회</u>의 ----- -----.</p>
<p>제2조(구성) ①<u>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제2조(구성) ①<u>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15명---</u>.</p>
<p>②<u>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u></p>	<p>②----- <u>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u>----- <u>위원</u> <u>중에서</u> -----.</p>
<p>③<u>위원은 유관기관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u></p>	<p>③----- <u>육성 등</u> <u>에</u> ----- <u>풍부한 사람</u> -----.</p>
<p>제3조(기능) 위원회는 <u>청소년의 육성발전을 기하고</u>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u>구청장</u>의 자문에 응한다.</p>	<p>제3조(기능) ----- <u>도모하고</u>--<u>각 호의</u> ----- <u>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u>관계 행정기관의</u> 시책 조정 및 협조</p>	<p>2. ----- <u>관</u> <u>계 행정기관</u>-----</p>
<p>3. 4. (생략)</p>	<p>3. 4. (현행과 같음)</p>
<p>5. <u>기타</u>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p>	<p>5. <u>그 밖에</u> -----</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 <u>의 임기는</u> <u>관련업무에</u> 재직기간으로 한다.</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 ----- ----- <u>관련 업무의</u> -----</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u>회무를 통할하고</u>,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u>사무를 총괄하고</u>----- ----- -----.</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u>자</u>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 ----- ----- <u>사람이</u> ----- -----.</p>
<p>제6조(회의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u>연2회</u>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p>	<p>제6조(회의개최) ①----- ----- <u>연</u> <u>2회</u>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위원장은 <u>표결권을 가지며</u> 가</p>	<p>③ <u>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u></p>

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생략)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 해
당 -----
-.

제7조(위원의 해촉) -----

----- 임기만료 전이라도 -----
-----.

1. ----- 임기 중 -----

2. -----
----- 그 밖의 -----

3.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
-----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해당 -----

-----.

제9조(간사와 서기) ①-----

<p>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u>1</u> 인과 서기 <u>1</u>인을 둔다. ②·③ (생략)</p>	<p>----- <u>1</u> <u>명</u>----- 1명-----. ②·③ (현행과 같음)</p>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6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5.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 정비 과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 개정 조항 정비
 - 조례 별표1의 직원 자격요건이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시행령의 자격조건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조례에 하위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삭제(안 제6조제2항)
 - 법령에 근거가 없는 수탁자 규제사항 삭제(안 제11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인재육성과, 전화 560-5893, 팩스 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 개정 조항 정비
 - 조례 별표1의 직원 자격요건이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시행령의 자격조건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조례에 하위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삭제(안제6조제2항)
 - 법령에 근거 없는 수탁자 규제사항 삭제(안 제1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매 3년”을 “3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허위나”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표 1의”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2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표 1의”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2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설치·운영)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매 3년</u>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3조(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 음)</p> <p>② ----- ----- ----- <u>3년</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1. <u>허위나</u> 부정한 방법으로 위 탁을 받은 경우</p> <p>2. ~ 5. (생 략)</p> <p>② (생 략)</p>	<p>제4조(위탁의 취소) ① ----- ----- ----- -----</p> <p>1. <u>거짓이나</u> ----- -----</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생 략)</p> <p>② 구청장은 <u>별표 1</u>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하고 채용방법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p> <p>③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p>	<p>제5조(조직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u>」 제14조제4항 <u>별 표2</u>의 ----- -----</p> <p>③ -----</p>

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자격 요건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제6조(복무)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 「청
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
조제4항 별표2의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복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공무원법」 -----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한 차례만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총괄하며 -----

<p>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 -----.</p>
<p>⑦·⑧ (생략)</p>	<p>⑦·⑧ (현행과 같음)</p>
<p>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u>관계공무원이</u>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지도·감독) ① ----- ----- ----- ----- ----- ----- <u>관계 공무원</u>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보험가입) <u>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u></p>	<p><u><삭제></u></p>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시행규칙) ----- <u>시행에</u> ----- -----.</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6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5.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 정비 과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 개정 조항 정비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수정 및 법령 낫표 표기(안 제1조)
 - 약칭표현 수정(안 제8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인재육성과, 전화 560-5893, 팩스 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 개정 조항 정비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수정 및 법령 낫표 표기(안 제1조)
 - 약칭표현 수정(안 제8조)
- 「알기 쉬운 법정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 제한구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윤락행위”를 “**성매매행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관할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조정 할”을 “**조정할**”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또는 기타”를 “**또는 그 밖의**”로,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없게된”을 “**없게 된**”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역내”를 “**구역**”으로, “해당구역”을 “**해당 구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역 내에서”를 “**구역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한다**”로 한다.

제8조 중 “구는”을 “**구청장은**”으로, “해당구역”을 “**해당 구역**”으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u>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청소년보호법</u>」 제31조에 따른 <u>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u>----- ----- -----.</p>
<p>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u>청소년통행금지구역</u>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u>각호의 1과</u> 같다.</p>	<p>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u>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u> -- <u>각호의 어느 하나와</u> --.</p>
<p>1. <u>청소년 통행금지구역</u> 가. <u>윤락행위</u>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u>기타</u>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p> <p>2. <u>청소년통행제한구역</u> 가.·나. (생략) 다. <u>관할지역</u>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지역</p>	<p>1. ----- 가. <u>성매매행위위</u>----- ----- 나. <u>그 밖에</u> ----- -----</p> <p>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관할 지역</u> ----- ----- -----</p>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생략)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역-----

----- 해당 구역-----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역에서 -----

-----.

②-----

설치·운영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

----- 해당 구역-----
-----.

제9조(시행규칙) ----- 시행에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654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5.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 정비 과제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 개정 조항 정비(안 제6조제2항제6호)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 삭제 및 누락된 사항 추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중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삭제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추가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인재육성과, 전화 560-5893, 팩스 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에 따라 정비(안 제6조제2항제6호)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 삭제 및 누락된 사항 추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중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삭제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추가

4.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u>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u>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 ----- ----- <u>지</u> <u>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u> <u>다)</u>-----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① (생략)</p> <p>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6. <u>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u></p> <p>7. (생략)</p> <p>③ (생략)</p>	<p>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u></p> <p>7.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관련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6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주민자치위원회 및 협의회 장학사업 근거 마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5.07.1.시행)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수강료 감면대상 정비
-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재정비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및 협의회 장학사업 근거 마련 : 제16조의 2 신설
 - 장학금의 지급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별표 2] 각종 프로그램(수강료) 중 감면대상 개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 : 50%감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2016. 5.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15,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제정이유

- 주민자치위원회 및 협의회 장학사업 추진 근거 마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5. 7. 1시행) 개정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및 협의회 장학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5. 7. 1시행) 개정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구역 내에”를 “구역에”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구역 내에”를 “구역에”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관할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아닌 자”를 “아닌 사람”으로, “자나”를 “사람이나”로 하고, 같은 조제6항 중 “주민자치협의회를”을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별표2로”를 “별표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법에 의해”를 “방법으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할구역 내의”를 “관할 구역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고 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그 해”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장학사업) ① 위원회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는 자체 재원마련을 통해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 ③ 장학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는 매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협의회 심의·의결로 정한다.
- ④ 장학생의 선발은 동장 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하되, 추천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추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장학금의 전달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시 전달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⑥ 장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은 현금 이외 물품 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⑦ 그 밖의 장학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사항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역 내에”를 “구역의”로, “방법에 따라”를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방법에 따라”를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아닌자”를 “아닌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할구역 내에”를 “관할 구역에”로 하며, 같은 조 7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중 “직무등”을 “직무 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위원장의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관할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해태 하였거나”를 “게을리하였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2조 중 “회의시 마다”를 “회의 시마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면액(제10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비율	비 고
각종시설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프로그램(강좌) 운영에 따른 이용 - 관내 직능단체 등의 회의 - 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구에서 주최(주관)하거나 법률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강좌 -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공연 	50%	
각종프로그램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년가장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100%	○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한 다문화가족 	5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단체"란 관할 <u>구역</u>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구역</u>에 ----- ----- -----.</p>
<p>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u>구역</u>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4조(설치 등) ① ----- ----- -----.</p> <p>----- <u>구역</u>에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능) ①·② (생략)</p> <p>③ <u>제2항의 규정</u>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p>	<p>제5조(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2항에도</u> ----- ----- -----.</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② (생략)</p> <p>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u>관할</u></p>	<p>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관할</u></p>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운영) ① ~ ③ (생략)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생략)

⑥구청장은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⑦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10

구역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아닌 사람-----

-----사람이나-----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

⑦-----

-----10명-----

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⑧ (생략)

제10조(사용료 등) ①·② (생략)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
율, 감면대상 등의 결정은 별표
1, 별표2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
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생략)

⑤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
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
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
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
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2조(주민참여) ① (생략)

②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
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별표2에서 -----

-----.

④ (현행과 같음)

⑤-----

----- 방법으로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 ① (현행과 같
음)

② 관할 구역의 -----

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생략)

<신설>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보고) ① -----

----- 보고하여야
-----.

② -----

----- 그 해 -----

-----.

제16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장학사업) ① 위원회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는 자체 재원마련을 통해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제17조(구성 등) ① (생략)

② 동장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서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③ 장학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는 매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④ 장학생의 선발은 동장 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하되, 추천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추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장학금의 전달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시 전달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장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은 현금 이외 물품 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⑦ 그 밖의 장학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사항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역의 -----

방법으로 -----

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
된 사람

③·④ (생략)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
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⑥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해
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
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
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
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생
략)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

1. (현행과 같음)

2. ----- 방법으로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아닌 사람 -----
-----.

⑥-----
----- 관할 구역에 -----

-----.

⑦ -----

----- 한
차례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정해진 -----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
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
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생략)

제20조(해촉) ① (생략)

1. 해당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
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
게 된 경우

2. ~ 5. (생략)

6. 그 밖의 위원이나 고문으로
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
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
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해촉) ① (현행과 같음)

1. ----- 관할 구역 -----

2. ~ 5. (현행과 같음)

6. -----
----- 게을리하였거나 --

② ----- 따른 -----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록) -----
회의 시마다 -----
-----.

관계법령 발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